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7호로 2023년 5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내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초근거리 체육공간인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실내 암벽장)』을 조성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우리동네 작은체육관(실내 암벽장)
소재지	영등포구 도신로60길7 라온아토 지상2층 201호
시설규모	전용면적 257.24㎡(연면적 333.73㎡)
주요시설	실내 암벽장, 교육장, 안내데스크, 휴게공간 등

나. 위탁개요

위탁기간	2023. 8. 1. ~ 2026. 7. 31. (3년) **<예정>**
위탁유형	수익창출형

위탁사무 내용	- 암벽장 질서계도, 청소, 회원 및 직원관리, 이용료 징수 등 운영 사항 -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개선을 통한 구민 만족도 증대 추진 - 기타 공공체육시설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필요한 수익사업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모집방법	공개모집
신청자격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전일 기준, 인공암벽장업종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실내 암벽장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민간 위탁료 예상액(수익창출형): 금 16,000천원(수입-지출)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내역
사업비 (지출)	소계	107,000	
	인건비	59,000	체육전문지도자 포함 인력 2인 인건비
	경상경비	17,000	시설 관리비, 사무관리비, 법정경비 등
	공과금 등	31,000	공과금, 4대보험료 등
수입내역	이용료 등	123,000	이용료, 사용료 등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관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초근거리 체육공간인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내에 실내 암벽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공개경쟁을 통해 실내 암벽장 운영 등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또는 개인)를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의 기간(2023.8.1. ~ 2026.7.31.)으로 예정되어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그 체육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사무는 구민들의 스포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무로서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며, 민간단체(또는 개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방식이 수익창출형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이용객 및 수입·지출 등의 실적을 측정하기에 용이하고 운영방식에 있어 직영 또는 예산지원형 방식보다 예산 절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06.12.>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